

각국의 안전관계 법령집

- 네덜란드 -

박 창 복

〈위험관리정보센터 차장〉

1. 네덜란드법의 특징

가. 역사적 배경

(1) 지방자치제의 힘이 강하다.

네덜란드는 현재 단일 왕국이지만, 나라의 성립부터 1795년 나폴레옹에게 지배되기까지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을 정식 명칭으로 하는 연방제 국가였다. 따라서 국토는 좁으나, 행정면에서는 주를 위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

(2) 대륙법계에 속하고, 성문법 중심이다.

네덜란드는 독일과 같이 게르만 민족으로 독일 법과 로마법의 영향하에 있었다. 그 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더욱이 18세기 말~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 지배를 받았다. 프랑스의 지배 아래서는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법전의 편찬이 이루어져 지배 기간은 짧았으나 프랑스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구미의 법체계를 양분하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중, 대륙법계에 속한다. 그러므로 법률은 영미법에서 보이는 관습법과 판례법은 없고, 성문법이 주체로 되어 있다. 다만, 판례는 법적으로는 그 사건에 한하여 유효하며, 다른 재판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종래의 판례의 법률 해석을 뒤엎는 것은 실제로는 드물어 사실상 법률에 가까운 효력을 지니고 있다.

(3) 네덜란드어가 필수

법령은 전부 네덜란드어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

·규칙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번역된 것은 적고, 있다 해도 간단한 팜플렛 정도이다. 따라서 실무에 필요한 법령·규칙의 검색에는 네덜란드어가 필수적이다.

나. 최근의 동향

(1) 규제완화·규제의 통일화

최근의 국제적인 정부 규제완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도 각종 규제완화나 각 시, 구청 차원에서 다른 규제의 통일에 의한 법령·규칙의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2) EC규격의 적극적인 채용

네덜란드는 나라가 좁고, 인구도 적으므로(약 1,500만명) 모든 규격을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도 있어, EC제국 중에서도 EC에 의한 법령이나 규격의 일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의 하나이다.

1993년 1월 시장통합 이후의 CEN규격에 적합한 제품(CEN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EC지역 내의 어떤 규격에 적합해도 가능)으로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CE마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네덜란드 국내 규격이나 기준에 관계없이 유통 및 사용을 인정하고, 건축재료나 공장의 설비 등도 CE마크가 붙어 있으면 네덜란드규격에 적합한지 체크할 필요가 없다.

다. 네덜란드 진출시에 필요한 인가

(1) 관계법령·인가 사항

네덜란드에 공장 등을 건설할 경우에는 주택법(Housing Act)에 의한 건축허가 외에 최소 부동산산침해방지법(Nuisance Act : 이하 Nuisance 법), 수면오탁방지법(Surface Water Pollution Act), 대기오염방지법(Air Pollution Act) 등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 외에 공장에 따라서는 소음에 의한 부동산산침해방지법(Sound Nuisance Act), 폐기물법(Waste Material Act), 화학약품폐기물법(Chemical Waste Act), 증기법(Steam Act) 등 각종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며, 구체적 안전에 따라 필요한 허가는 다르다.

실제로 진출시에는 어떠한 허가가 필요한지 시, 구청(Burgomaster and Aldermen : 蘭)을 위시한 관계관청에 상담할 필요가 있다.

(2)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시, 구청이 아래 부서의 의견을 듣고 발급한다.

- 지방건축물미관위원회(건물 외관에 관하여)
- 소방서
- 노동감독관
- 국영 도로, 교량, 수로공단(배수처리에 관하여)
- 지방 도로, 교량, 수로, 지하수공단(배수처리에 관하여)

(3) 부동산산침해방지법 및 대기오염방지법에 관한 허가

부동산산침해방지법 및 대기오염방지법에 관한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가 아래에 표시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고 발급한다.

- Burgomaster and Aldermen 및 소방서(방화관련사항)
- 지방노동감독관 사무소
- Stoomwezen Office(탱크, 압력용기 등)
- 건강감독관

(4) 수면오탁방지법에 관한 허가

수면오탁방지법에 관한 허가는 국영 도로, 교량, 수로공단이 국립배수정화연구소의 조언을 들

고 발급한다.

2. 네덜란드의 방화·방폭에 관한 규제

가.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과 요구사항

(1)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

네덜란드의 방화·방폭관련 규정은 건축칙령에 정리되어 있으나, 사양이나 시험방법 등, 세부 실무적인 부분은 NEN에 준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 구조에 관한 규제

구조에 관해서는 건축칙령에 규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다만, 내화성능이 시험방법에 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네덜란드 규격은 많다.

(3) 피난시설에 관한 규정

피난시설에 관해서는 건축칙령에 필요한 수나 폭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규정

건축칙령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동 설비의 구조에 대해서는 네덜란드규격 NEN-EN54-1~9에 나와 있다.

(5) 소화설비, 그 외에 관한 규정

건축칙령에서는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만 규정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등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면적을 크게 하는 등 건축칙령의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시는 스프링클러협회규칙에 준하도록 실무상 요구되고 있다.

나. 건축물의 용도별 요구사항

건축칙령에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나누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무소 및 호텔에 대해서 추가규정을 두고 있다. 상업시설, 공장 등 다른 비주거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특칙은 없고, 추가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시, 구청마다 빌딩코드가 달랐던 것도 있어, 실무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규제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다만, 네덜란드인 설계사에 의하

면, 공장 등에 대한 추가규정을 두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3. 법령·규칙의 운용실태와 진출시의 유의점

가. 방화·방폭법규상의 요구사항과 실무상의 운용

(1) 실무의 운용실태

(가) 법령·규칙의 유연한 운용

네덜란드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그다지 상세할 필요는 없고, 상세는 담당관과 교섭과정에서 채워가는 것이 많다. 실제로는 담당관과의 교섭과정에서 법령·규칙의 요청사항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시 법령·규칙의 요청사항에 구애되지 않고 “이것으로 건축허가가 나면 최선”이라는 내용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Haag의 노동성 건물은 9층 건물과 6층 건물의 2개 빌딩을 중정(中井)으로 된 로비 부분으로 이은 복잡한 형의 건물이나, 설계자의 “가급적 개방적인 건물로 하고 싶다”는 의도에 따라 내부가 방화구획으로 분할되지 않고, 빌딩 전체가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대체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방화구획 최대면적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받았다(건축칙령에는 칙령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대체조치를 취함으로써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 있다).

또한, 건축칙령의 규정은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용도별 특칙으로 실무상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는 사무소빌딩과 숙박시설 뿐으로 공장 등에는 아직 특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무상은 공장 등 특칙이 없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담당

관의 재량으로 상당히 유연한 취급이 가능하다는 배경도 있다.

(나) 담당관과의 개인적 신뢰관계의 중요성

건축허가신청을 심사하는 담당관에도 각각 전문분야가 있어 건축 전반에 밝다고는 할 수 없다. 전문분야 외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담당관은 안전을 위해 법령·규칙을 엄격하게 시험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신청을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종류의 건축물에 밝은 담당관에게 사전에 타진하여 해당 신청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사전에 교섭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담당관의 전문분야는 각각 세분류되어(예로, 암스테르담시에서는 고층건축물의 방화관계에 밝은 담당관은 1~2명 밖에 없다) 있어 평소부터 담당관과 개인적으로 친해 두지 않으면 최적의 담당관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 관계자와의 평상시 conduct의 중요성

건축허가신청은 관계 건축가 등에 의해 외관이 주위의 건물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가를 우선 심사받게 되며, 이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서는 관계자와 평소에 사귀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라) 공적 시험연구기관의 보고서

법령·규칙의 요구와 대폭 다른 설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나 담당관이 안전성에 대해 자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TNO(The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 네덜란드응용과학연구기구) 등의 공적 시험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많다.

(2) 민간기준 등의 이용상황

(가) 네덜란드규격(NEN)

건축칙령의 규정은 최종적으로는 NEN에 의하도록 지정된 경우가 대단히 많다. NEN은 극히 일부 외는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고, 목록도 네덜란드어만 되어 있어 네덜란드어를 모르면 내용의 조사가 어렵다.

(나) 외국의 규격

현지 실무자에 의하면, NEN 대신에 독일의 DIN이나 영국의 BS 등 외국의 규격을 사용하여 설계하는 경우도 이따금 있으며, 담당관과의 교섭 나름으로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다.

과거에 사용한 외국의 규격으로서는 DIN이나 BS 외에 다른 EC제국의 규격이 많고, 일본이나 미국의 규격을 사용한 적은 없다.

(다) 스프링클러협회 규칙(Voorschriften voor Sprinklerinstallaties)

네덜란드에서는 스프링클러협회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화구획의 최대면적 완화조치나 화재보험료의 할인 등의 메리트를 얻을 수 없다.

나. 진출시의 방화·방폭상의 유의점

(1) 현 시점에서의 법령 확인

건축칙령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 기존과 신축으로 나누어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다. 이 중 비주거용의 건축물에는 용도별로 특칙을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로는 사무소 빌딩, 숙박시설에만 특칙이 있다.

현지의 네덜란드 건축사에 의하면, 공장 등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특칙의 제정을 준비 중에 있어, 실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뉴산스법(Nuisance Act)

네덜란드의 경우, 방화·방폭관련의 규정이 진출시에 실제로 장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편, 네덜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해면 아래의 낮은 땅이며, 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좀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오염물질이 토양에 쌓이기 쉬운 자연조건 때문에 토양오염에 관하여는 뉴산스법에 의해 극히 엄하게 규정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뉴산스법의 심의 때문에 건축허가의 발급이 대폭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로 진출할 때에는 뉴산스법을 위시하여 환경관련 규제를 충분히 체크해 두는 것이 진출 후의 트러블을 피할 수 있고, 진출 허가를 얻는데에도 필요하다.

참고 : 본 내용 중의 원문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 780-4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